

공정거래 업무처리 규정

제정 2023. 1. 1.

제1장 총 칙

제1조 [목적]

본 규정은 대덕전자(주)(이하 '회사')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공정거래 법령과 관련된 제반사항 및 업무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예방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적용범위]

- ① 본 규정은 회사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임직원과 회사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된다.
- ② 회사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공정거래 총괄부서"(이하 "총괄부서"라 한다)란 회사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서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2. "계약요청부서"란 필요에 따라 물품·공사, 용역 등의 업체와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3. "계약담당부서"란 계약요청부서의 요청에 따라 계약 협의 및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4. "업무주관부서"란 총괄부서를 제외하고 회사내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약이행평가 대응 및 조사, 조정, 분쟁대응 등 제반업무와 관련된 각 부서를 말한다.
- 5. "공정거래 관련 법령"이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이하 "공정거래법"이라 한다)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"하도급법"이라 한다) 등 공정거래위원회(이하 "공정위"라 한다)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, 시행령, 고시, 지침 등을 의미한다.

- 6. "자율준수"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.
- 7. "하도급거래"란 "하도급법"에 따라 회사의 주요 생산품인 PCB(인쇄회로기판) 제조와 관련한 제조위탁 거래를 말한다.
- 8. "공정거래협약"이란 회사와 중소기업 협력업체가 "하도급법", "공정거래법" 등의 "공정위" 소관 관련 법규 및 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상생협력법"이라 한다.)의 자율적인 준수와 상생협력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을 하고, 공정위가 그 이행사항을 점검, 평가하여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.
- 9. "특수관계인"이란 당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(이하 "동일인")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.

제2장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

제4조 [자율준수 원칙]

- ①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계약요청 및 담당업무와 관련된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제5조에서 정한 공정거래 자기진단을 수행하여야 한다.

제5조 [공정거래 자기진단]

- ① 계약요청부서와 계약담당부서는 매월 1회 계약상대방에 관하여 '자기진단 체크리스트'(붙임1)를 통해 법 위반여부 등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공정거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바, 계약요청부서는 '자기진단 체크리스트(I)'을 계약담당부서는 '자기진단 체크리스트(II)'를 작성한다.
- ② 계약요청부서 및 계약담당부서는 전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에 대한 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또는 계약조건 등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그 처리방안에 관한 업무협조를 구하여야 한다.

제6조 [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금지]

- ① 회사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자금, 자산, 상품 및 인력지원을 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여 특수관계인 등을 지원하는 행위 등 부당지원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회사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공정거

래 관련 법령의 위반여부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
제7조 [부당한 공동행위 금지]

- ① 회사는 다른 법인 및 사업자와 계약, 협정, 결의,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격의 결정 유지, 변경, 거래조건의 결정, 생산량·출고 제한, 시장·고객 분할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회사의 임직원들은 경쟁사와의 접촉·교신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가격, 기타 거래조건, 생산 등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경쟁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교환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회사의 임직원은 경쟁사와 접촉·교신하거나, 협력업체 등 직·간접적으로 경쟁사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교환하기에 앞서 경쟁사 접촉 관련 자기진단 체크리스트(붙임2)를 작성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경쟁사와의 정보교환 등 유의사항 가이드라인(붙임3)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
제8조 [부당한 거래거절 금지]

- ① 회사는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,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회사는 상품(용역) 등에 대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 거래 상대방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해당 계약의 가격, 물량, 납품기일, 계약기간 등 세부 거래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, 계약 해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아니된다.

제9조 [차별적 취급 행위 금지]

- ① 회사는 계약해지, 단가 변경, 물량변경, 납품기일 변경 등 세부적인 거래조건을 설정할 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에게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합리적 거래기준이 아니라, 계열 관계 혹은 비합리적 기준 등에 따라 거래 상대방별로 차별적인 거래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0조 [구속조건부 거래 행위 금지]

- ① 회사는 상품(용역) 계약의 거래 상대방에게 계약 성사 조건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경쟁사와는 거래를 금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해서는 아니된다.

- ② 회사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.

제11조 [거래상 지위남용 금지]

- ① 회사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이익제공 강요, 불이익 제공 및 경영간섭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회사는 상품(용역) 등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에 거래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통보해서는 아니된다.
- ③ 회사는 계약조건이 확정된 계약에 관하여 공사비 산출 착오 등의 사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 또는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④ 회사와 거래중인 계약상대방에게 해당 거래와 관련이 없는 향응, 상품권 등 경제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.

제12조 [하도급법령의 준수]

- ① 회사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하도급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전항에 따라 하도급법에서 요구하는 서면 발급 등 제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'하도급거래 관련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규칙'으로 정한다.

제13조 [사전업무협의]

- ① 회사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총괄부서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 1. 동종업계 관계자의 접촉, 계약/구매/입찰 사무
 2. 계열사간 거래
 3.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신청 관련된 절차의 참여 및 자료 작성과 제출
 4. 상기 각호 외에 임직원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의 수행
- ② 임직원은 사전업무협의 시 총괄부서에 그룹웨어 법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.
- ③ 총괄부서장은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공정거래 법규 위반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수행 업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총괄부서장은 위 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도 문서 시스템을 통해 회신하여야 한다. 다만 업무의 성격상 시급한 의사결정이

필요한 경우 전자메일 등을 활용해 먼저 회신할 수 있다.

제 3 장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사건 처리

제14조 [조사사건 처리]

- ① 총괄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거나 조사 착수를 통보받은 경우,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업무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업무주관부서는 총괄부서의 주도 하에 제출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.
- ③ 총괄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사건에 대한 소명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업무주관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소명자료와 회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업무주관부서는 총괄부서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총괄부서는 회사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회사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.

제15조 [공정거래 위반행위 통지 및 처리]

- ①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에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,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총괄부서에 알려야 한다.
- ② 총괄부서는 공정거래 위반행위 통지 내용을 검토한 결과,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이 규정 위반 결과가 드러난 경우 업무주관부서에 통보한다.
- ③ 업무주관부서는 위반내용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
제16조 [직접보고체계]

총괄부서장은 임직원의 명백한 법 위반 행위(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행위를 포함한다)를 확인하였을 경우 그 시급성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유관부서에 관련 사실을 공유하거나 협조를 구하지 않고 직접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.

제 4 장 공정거래 문화 확산

제17조 [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]

회사는 공정거래 문화 확산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자율적으로 사전 심의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'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'를 조직하고 운영한다. 구체적인 내용은 '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'으로 정한다.

제18조 [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이행, 평가]

- ① 회사는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, 부품, 상품,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소기업 협력업체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"공정거래협약"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을 이행한다.
- ② 총괄부서는 업무주관부서에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업무주관부서가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,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한다.
- ③ 업무주관부서는 공정거래협약 이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와 함께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.
- ④ 총괄부서는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공정위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요청하고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다.
- ⑤ 업무주관부서는 총괄부서로부터 협약이행 평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.
- ⑥ 총괄부서는 공정위로부터 협약이행 평가를 위한 현장실사를 통보받은 경우 업무주관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소명자료와 회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⑦ 총괄부서는 공정위로부터 협약이행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즉시 업무주관부서에 통지하고 협약이행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
제19조 [서약서 징구 등]

- ① 총괄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풍토를 조성하고,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서약서(붙임5) 징구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.
- ② 모든 임직원은 연1회 공정거래 서약서(붙임5)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0조 [교육]

- ① 총괄부서는 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의식 및 준법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며, 필요시 외부 위탁 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소개·제공하거나 외부 전문인 초청특강을 실시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② 총괄부서는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빈번하게 수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21조 [하위규정의 제정]

총괄부서는 본 규정과 관련된 업무처리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세부사항 및 업무절차 등을 규칙, 지침 등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의 사규관리규정에 정한바에 따른다.

부 칙 <제정>

제1조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제2조 본 규정의 제정으로 ISO 표준문서 등 기존 공정거래 관련 사규는 본 규정으로 대체하며 본 규정 발효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.